

대구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5나22534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5나22534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합410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3. 9.

판결 선고 2016. 4.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합410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대진건설 사이에 체결된 '신월성 1호기,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 정비공사 중 2차측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수행 지원 업무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금액의 증액 및 기간연장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6차에 걸쳐 부종계약인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제6차 변경계약은 제5차 변경계약에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계약금액의 증액에 불과한 것인바, 대진건설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인 2014. 1. 15.까지 이행한 부분의 기성금액이 제5차 변경계약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제5차 변경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진건설의 제5차 변경계약상 기성금액이 약정금액에 이르렀을 때가 실제이행기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대진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이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약정된 기간 내 약정된 금액만큼 '시운전 정비공사 중 2차측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수행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2호증(타절정산 세부산출내역)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진건설이 업무수행을 포기할 당시까지의 기성금액은 1,470,613,100원으로서 제5차 변경계약상 약정된 계약금액 1,444,531,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진건설은 제5차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진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1 내지 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해당하는 보증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계약상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2013. 1. 31.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피고의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진건설의 제5차 변경계약에 따른 기성금이 약정금액에 이르렀을 때가 실제이행기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장래아

판사진원두